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지하철,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(PM2.5)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'실내공기질 관리법' 하위법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(지하철), 철도,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. 다만 시내버스,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.
※ 시내·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관리대상 대중교통차량에 미포함

아울러,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'실내공기질 관리법'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.

'실내공기질 관리법'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대중교통차량(도시철도, 철도, 시외버스)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
2.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(PM2.5) 권고기준 신설
3.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(2021.4.1. 시행)
4. 430㎡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, 가정·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